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소 성 섭

군장대학교 간호과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and Occupational Awareness of Long-Term Care Givers

So, Seong-Sup

Departmen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Gunsan, Korea

Purpose: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tudy to explor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and occupational awareness in long-term care givers. The convenience sample consisted of 119 long-term care givers who worked at three long-term care facilities located in one city and one gun. Data were collected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October 28 to November 21, 2010. **Methods:**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and Pearson correlation using the SPSS/WIN 17.0 program. **Results:** The average score of sub-region sections including the physical and mental freedom of actions was the lowest of all with a score of 2.04, and they appeared to be pro-human rights. The subject's degree of professionalism scored the average of 3.07 out of 5 points which is more than half having professionalism. As a result, geriatric care workers taking care of elders can both be defenders of human rights and subjects of human right abuse. In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were relatively pro-human rights. Particularly attitude to right for physical freedom and freedom for privacy were relatively negative. The occupational awareness was also relatively high. Particularly scores for business desired and work satisfaction were high whereas scores for satisfaction to salary and promotion were relatively low. **Conclusion:** The attitude to elderly human rights of the long-term care givers is important to guarantee humanistic life of the elderly in long-term care facility. Education on human rights should be included in the curriculum for long-term care givers and should be regularly provided as continuing education.

Key Words: Long- term care givers, Facility, Elderly, Human rights, Occup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여러 선진국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인구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2.2%이

며, 2030년에는 24.3%로 초 고령 사회가 되어 2050년에는 노인인구가 37.4%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3).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노인인구의 양적인 증가와 질환의 양상이 급성기 질환에서 만성퇴행성 질환인 치매, 뇌졸중 등으로 변화되고 있다(선우덕, 2003). 이것은 노인의료 이용의 증가뿐만 아니라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노인 돌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주요어: 요양보호사, 노인, 시설, 인권, 직업

Corresponding author: So, Seong-Sup

Department of Nursing, Kunjang University College, 13 Kunjangdae-gil, Sungsan-myun, Gunsan 573-709, Korea.
Tel: +82-63-450-8392, Fax: +82-63-450-8392, E-mail: sso@kunjang.ac.kr

- 이 논문은 제1저자 소성섭의 석사학위논문 축약본임.

- This article is a condensed form of the first author's master's thesis from Jeonbuk University.

투고일: 2014년 5월 8일 /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30일 / 게재확정일: 2014년 7월 2일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기능을 회복, 유지 및 향상시키는 데 주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011년 노인 1인당 월평균진료비는 247,166원으로 2002년 94,405원 보다 2.6배 이상 증가하였다. 장기요양인정자수를 보면, 2011년 상반기기준(6월말) 320,261명으로 2009년 286,907명, 2010년 312,138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13).

가족의 구성이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가족의 부양역할은 약화되고 있다. 성인의 약 70%가 노인의 부양문제로 가정보다는 사회와 국가가 해결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우국희, 2009). 따라서 노인에 대한 사회적인 기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노인복지 관련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은영, 구미옥, 김은심, 강영실, 2001). 정부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하여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가족의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다. 이는 소외된 노인들에게 사회적인 돌봄을 지원함으로써 급속한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시행해 오고 있다(김대심, 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된 후 공식적인 노인 돌봄을 행하는 최 일선의 인력이 요양보호사가 되었고, 이들의 직업의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양성과 양성기관의 난립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는 요양보호사의 직업성 저하와 지속적인 관리 및 감독의 부재로 노인서비스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현실이다. 요양보호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관의 노력은 활발하나 이들이 정작 실천현장에서 돌봄 제공자로서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가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노인에게 불리한 환경이나 인권에 대해 옹호할 수 있는 직업의식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김대심, 2010). 요양보호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노인의 인권침해에 대해 바로 알고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인권의 보호·증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은 필수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김기경, 2010).

직업의식은 사람들이 직업에 적응할 때 중요한 요인으로, 산업화 사회의 과정에서 직업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생성되면서 많은 직업들이 고역이 될 수도 있고, 보람의 원천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들은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학대행위에 가담할 수 있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어있다(이인수, 1997; 채은희, 이효영, 200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에 따른 시설과 돌봄 인력의 급증이 자녀나 가족들의 돌봄에서 요양보호사의 돌봄으로 전환되고 있다. 요양보호사들은 자신을 채용한 노인의 보호자들 곧 가족의 의

중을 따르거나, 시설에서 근무할 시에는 시설의 근무환경과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부적절한 실천에 의해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연순, 2010).

김에스더(2014)는 Pillemer & Bachman (1991)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성별, 연령, 급여, 학력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직무요인으로 학력, 급여, 고용상태, 근무형태, 시설규모 및 입소정원, 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노인의 수, 이직률, 근무경력 등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설규모나 영리상태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였다. 시설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지만 방임과 서비스의 질에는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시설에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노인에게 긍정적이고 폭력행위가 적다고 하였다.

이인수(2006)는 연령이 낮고 시설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노인통제 경험기술이 많아지면서,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며 비인격적인 언행을 시도하는 경향이 높다고 하였다.

권지영(2009)의 연구에 의하면 시설 종사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보다 계약직일수록, 근무형태가 정규시간제 및 1일 2교대 보다 1일 3교대일수록, 1인 담당 노인수가 많을수록 노인학대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덕순(2010)의 연구에 의하면 교육 횟수뿐 아니라, 요양보호사들의 교육장소 및 교육내용 등에서도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of Units on aging (2005)의 보고서는 종사자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의 부족과 높은 이직률을 원인으로 말한다. 현재 요양보호사의 노인학대교육과 관련한 외부 교육이나 훈련을 담당하는 기관이 없다고 하였다. 시설자체 내에서의 교육도 쉽지 않아 종사자의 노인학대 인식의 부족과 전문성부족으로 시설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입소노인의 부적절한 처우는 노인인권문제에 놓여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의식은 개인의 관점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그들의 직업의식 편차가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양적으로 증가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직업의식과 연결시켜 탐색한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함이며, 그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를 규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직업의식의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수집

본 연구는 J도 2개 시와 1개 군에 소재한 3개 노인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중 본 연구의 목적과 설명 듣고 본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를 동의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표적모집단은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우리나라 전체 요양보호사이며 근접모집단은 J도의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이다. 구체적인 대상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노인요양시설에서 근무하며, 글을 읽고 설문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연구참여에 동의한 자이다. 제외기준은 설문지를 읽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자, 설문지 작성 등 연구에의 참여가 불성실한 자, 연구참여에 동의하지 않은 자이다. 위의 선정기준을 충족시키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30명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총 119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표본의 크기는 G*Power 3.10 프로그램(Faul, Erdfelder, Buchner, & Lang, 2009)을 이용하여, 유의수준(α) .05, 검정력($1-\beta$) .80, 효과 크기(f^2)는 .28로 하였을 때 103명이 표본수로 산출되었고 탈락률 20%를 고려하여 총 130부를 배부하여 자료수집을 실시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총 119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결과분석에 사용하여 자료수집을 위한

표본수는 적절하였다.

3. 연구도구

1)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고명석(200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도구는 총 3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하위영역은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5문항), 신체적 자유권(4문항),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7문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7문항),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3문항), 방임(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 도구는 Likert식 5점 척도로 '아주 약함' 1점, '약함' 2점, '보통' 3점, '강함' 4점, '아주 강함' 5점으로, 점수가 낮을수록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가 친인권적임을 의미하며 이는 인권문제와 관련된 도덕적 판단을 위한 판단능력(박성익, 이승미, 2000)이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김대심(2010)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98이었다.

2) 직업의식 측정도구

직업의식 측정도구는 광선행(2008)이 개발한 도구로서 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도구는 직업의식 정도를 측정하는 Likert식 5점 척도로 '매우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직업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도구의 신뢰도는 광선행(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85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 .87이었다.

3) 대상자의 특성조사지

대상자 특성은 크게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근무 사항을 조사하였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결혼 상태, 학력, 종교, 월 수입을 조사하였으며, 근무특성으로는 근무형태, 현 직장 근무기간, 현 주당 근무시간, 기관에서 근무기간 중 인권과 관련한 교육이나 연수 받았는지 받았다면 회수에 대해 조사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이었다. 자료수집을 허락한 시설을 연구자가 직접 방

문하여, 시설장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본 연구자와 시설장과 함께 방문일정을 의논하였다. 연구자는 방문일정에 따라 대상자들이 편리한 시간에 방문하여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작성하고 수집하였다. 자료수집을 실시하기 전에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언제든지 연구참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 수집된 자료는 비밀이 보장된다는 것, 그리고 연구참여를 수락하였지만 도중에 참여를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이를 이해하고 연구참여에 동의한 대상자는 서면동의서를 작성하고, 설문지에 자기기입식 방법으로 기록하도록 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작은 선물을 전달하였으며, 응답이 끝난 설문지는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다. 총 130부를 배부한 결과 응답이 불성실한 11부를 제외한 119부가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구체적인 자료분석방법으로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t-test,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5.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대상자의 선정에 있어서 전라북도 2개 시와 1개 군에 소재한 3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임의표집을 하였으므로, 본 연구를 일반화하거나 확대 해석할 때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남자 5명(4.2%), 여자 114명(95.8%)으로 대부분 여자이었다. 평균연령은 46.55세였으며, 40~49세 사이의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50세 이상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학력은 고졸이 70명(58.8%)이 대부분이었고 종교는 기독교가 64명(53.8%)으로 가장 많았으며 종교가 없는 경우도 30명(25.2%)으로 나타났다. 결혼 상태는 기혼이 104명(87.4%)으로 가장 많았다. 월수입은 평균 128만원이었으며, 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이 72명(60.5%)으로 가장 높았

다. 근무경력은 평균 2년 8개월이고, 1년 이상~5년 미만이 70명(58.8%)으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이상 22명(18.5%), 1년 미만 27명(22.7%)의 순이었다. 주당 근무시간은 평균 45시간 근무하였고, 주 40시간 근무자는 80명(67.2%), 41~60시간 30명(25.2%)으로 나타났다. 근무형태는 계약직이 68명(57.1%)으로 정규직 51명(42.9%)보다 많았다. 인권교육을 받은 횟수는 1~2회가 60명(50.4%)이었고,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도 24명(20.2%)이었다(표 1).

표 1. 대상자의 특성

(N=119)

특성	구분	n (%)	M±SD
성별	남자	5 (4.2)	
	여자	114 (95.8)	
연령	29세 이하	4 (3.4)	46.55±7.00
	30~39세	9 (7.6)	
	40~49세	55 (46.2)	
	50세 이상	51 (42.9)	
학력	중졸	7 (5.9)	
	고졸	70 (58.8)	
	대졸 이상	42 (35.3)	
종교	없음	30 (25.2)	
	기독교	64 (53.8)	
	불교	8 (6.7)	
	천주교	17 (14.3)	
결혼상태	기혼	104 (87.4)	
	미혼	10 (8.4)	
	사별, 이혼	5 (4.2)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23.5)	127.65±22.49
	100~150만원	72 (60.5)	
	151만원 이상	20 (16.0)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27 (22.7)	2.84±2.74
	1~5년	70 (58.8)	
	5년 이상	22 (18.5)	
근무시간 (주)	40시간	80 (67.2)	44.69±8.30
	41~60시간	30 (25.2)	
	61시간 이상	9 (7.6)	
근무형태	정규직	51 (42.9)	
	계약직	68 (57.1)	
인권교육 횟수	없음	24 (20.2)	
	1~2회	60 (50.4)	
	3회이상	35 (29.4)	

2.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는 5점 만점에 2.08점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별 평균 점수는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은

2.33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0점,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 2.09점, 방임 2.06점, 신체적 자유권과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은 각각 2.04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들의 신체적 자유권과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이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보다 더 친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정도 (N=119)

구분	M±SD
노인인권에 대한태도	2.08±0.85
신체적 자유권	2.04±0.87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2.04±0.87
방임	2.06±1.12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	2.09±1.18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2.10±0.89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2.33±0.90

3. 대상자의 직업의식

대상자의 직업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07점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직업의식에 포함된 문항 중 ‘나는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임하고 있다’가 3.98점, ‘나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가 3.61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나의 직장 은 승진경로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가 2.44점, ‘어느 정도 승진하였다고 생각한다’가 2.45점의 낮은 점수를 보였다(Table 3).

표 3. 대상자의 직업의식 정도 (N=119)

구분	M±SD
직업의식	3.07±0.67
나의 업무에 대한 의욕을 갖고 임하고 있다.	3.98±0.85
나의 업무에 만족하고 있다.	3.61±0.88
현재의 업무에 대해 사회적 가치를 느끼고 있다.	3.37±1.04
지식이나 능력을 살리고 있다고 생각한다.	3.12±0.94
일하기 좋은 직장에 있다고 생각한다.	2.94±0.90
지금 봉급에 만족하고 있다.	2.58±1.04
어느 정도 승진하였다고 생각한다.	2.45±0.97
나의 직장은 승진경로가 개방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2.44±1.00

4.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

는 약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r=-.16, p=.088$).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의 하위영역과 직업의식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신체적 자유권과 직업의식($r=-.17, p=.060$),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과 직업의식($r=-.17, p=.060$), 방임과 직업의식($r=-.12, p=.191$),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와 직업의식($r=-.11, p=.2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직업의식($r=-.13, p=.145$),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과 직업의식($r=-.14, p=.128$)에서 역상관관계가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4).

표 4.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 간의 상관관계 (N=119)

특성	r (p)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16 (.088)
신체적 자유권	-.17 (.060)
정신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17 (.060)
방임	-.12 (.191)
정서적 지원을 받을 권리	-.11 (.22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3 (.145)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	-.14 (.128)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

대상자의 성별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는 남자 1.99점, 여자 2.08점으로 남자의 태도가 친인권적이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24, p=.808$). 연령에 따라서는 50세 미만 1.91점, 50세 이상 2.10점으로, 50세 미만 대상자가 친인권적인 태도를 지녔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0.75, p=.457$). 학력은 고졸 이하는 2.06점, 대졸 이상은 2.12로 고졸 이하의 대상자가 친인권적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0.38, p=.702$). 종교에서 종교가 있는 대상자 2.03점, 없는 대상자 2.22점으로 종교가 있는 대상자가 없는 대상자보다 노인인권에 대해 친인권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04, p=.301$). 배우자가 있는 경우 2.05점, 없는 경우 2.26점으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가 친인권적이었으나($t=-0.90, p=.372$),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월수입 100만원 미만인 1.98점, 150만원 이상 2.08점, 100~150만원 미만은 2.12점으로 월수입 100만원 미만에서 노인에 대해 친인권적이었고($t=-0.27, p=.765$), 근무경력이 1년 미만 1.91점, 5년 이상 1.97점, 1~5년 미만 2.18점으로 경력이 적을수록 노인에 대해 친인권적이었으나($t=-1.26$

논 의

$p=.28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근무형태는 계약직 2.00점, 정규직 2.18점으로 노인에 대해 친인권적인 태도를 지녔고($t=-1.10$, $p=.275$), 주당근무 40시간 미만 1.77점, 41시간 이상 2.00점, 40시간 2.19점의 순으로 40시간 미만에서 노인에 대해 친인권적으로 나타났으나($t=-1.81$, $p=.168$)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권교육 경험에 있는 경우가 2.02점, 없는 경우 2.33점으로, 인권교육 경험자에서 노인에 대해 태도가 친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1.63$, $p=.105$)(표 5).

이상과 같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정도는 모든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남자, 50세 미만, 고졸 이하, 종교 있음, 배우자 있음, 월수입 100만원 미만, 근무경력 1년 미만, 계약직, 주당 40시간 미만 근무자, 인권교육 경험에 있는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가 친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및 직업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로서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본 연구대상자는 여성이 95.8%로 거의 대부분이었으며, 연령대는 40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는 전통적으로 돌봄의 주체가 여성이라는 사고에 의한 것이며, 사회 속에서 학습된 성역할 때문이라고 분석되는데, 이는 기존의 돌봄에서 여성들의 역할이 더 많았기 때문이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에 따라 간병, 간호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여성이나 중·고령층에게 적합한 취업기회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손덕순, 2010).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치는 노인 2.5명당 1명이 배치되며, 기본적인 업무부터 전문적인 업무까지 다양한 업무를 맡고 있지만 적은 임금과 근무시간동안 문제행동을 보이는 노인들과 지내면서 고된 업무를

표 5.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의 차이

(N=119)

특성	구분	n	노인인권		직업의식	
			M±SD	t or F (p)	M±SD	t or F (p)
성별	남자	5	1.99±0.86	-0.24	3.25±0.56	0.60
	여자	114	2.08±0.85	(.808)	3.07±0.67	(.548)
연령	50세 미만	13	1.91±0.87	-0.75	2.97±0.73	-0.59
	50세 이상	106	2.10±0.85	(.457)	3.09±0.66	(.557)
학력	고졸 이하	77	2.06±0.82	-0.38	3.03±0.69	-0.99
	대졸 이상	42	2.12±0.90	(.702)	3.16±0.62	(.323)
종교	있음	89	2.04±0.82	0.97	3.15±0.64	-2.08
	없음	30	2.21±0.93	(.335)	2.86±0.70	(.039)
배우자	유	104	2.05±0.84	-0.90	3.10±0.66	1.09
	무	15	2.26±0.88	(.372)	2.90±0.70	(.280)
월수입	100만원 미만	27	1.98±0.68	0.27	3.06±0.74	1.90
	100~150만원	72	2.12±0.90	(.765)	3.01±0.64	(.155)
	151만원 이상	20	2.08±0.90		3.33±0.63	
현 직장 근무기간	1년 미만	27	1.91±0.79	1.26	3.22±0.62	2.00
	1년~5년 미만	70	2.18±0.89	(.288)	2.97±0.70	(.143)
	5년 이상	22	1.97±0.74		3.22±0.67	
근무형태	정규직	51	2.18±0.95	1.10	3.06±0.67	-0.14
	계약직	68	2.00±0.76	(.275)	3.08±0.67	(.888)
근무시간 (주)	40시간 미만	16	1.77±0.69	1.81	3.02±0.70	1.16
	40시간	69	2.19±0.94	(.168)	3.23±0.62	(.316)
	41시간 이상	34	2.00±0.67		3.04±0.32	
인권교육 경험	있음	95	2.02±0.82	-1.63	3.08±0.72	0.23
	없음	24	2.33±0.91	(.105)	3.05±0.41	(.820)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에서의 노인인권문제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종사자의 인구학적 요인 및 직업의식으로 살펴보면, 요양보호사는 열악한 근무환경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낮은 임금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불안정한 고용상태, 전문성의 부재 등의 열악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다(김에스터, 2014). 본 연구에서도 월수입은 100만원 미만인 경우가 23.5%를 차지해 저임금 상태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주 평균 근무시간은 대부분 40시간이지만 41시간 이상 근무자도 28.8%를 차지하여 시설종사자의 주 평균 노동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대상자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근무형태는 계약직이 정규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의 고용불안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 초과근무는 요양보호사의 피로를 가중시키고 사기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직업의식의 저하로 이어져 결국 노인에 대한 서비스의 질과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해 태도를 보면 중간 정도의 친 인권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 측정도구가 달라서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 중간 이상의 친인권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보고한 손덕순(2010)의 연구보다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이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하위영역별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면, 신체적 자유권 영역과 정서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 영역에서 가장 친 인권적이었던 반면, 사생활에 대한 자유권 영역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영역에서 가장 비 인권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의 신체적 자유권과 정서적·경제적 활동의 자유권은 존중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노인의 사생활에 관한 자유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대해서는 돌봄 상황에서 큰 배려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시설종사자들이 노인을 돌볼 때는 돌봄을 수여하는 입장에서 습관적으로 신체나 정서적 돌봄을 제공하기보다는, 좀 더 노인의 입장이 되어 노인들의 사생활 보장이라든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민감성을 가지고 서비스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겠다.

정경희(2004)의 연구에 의하면 무료 실비 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에서 종사자의 과도한 업무 부담이 노인요양시설에서의 인권침해 발생 원인으로 조사되었다. 조운희(2008)의 연구에서도 인권침해가 직원의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 충분하고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구체적인 노인인권

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이 아니므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상관관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법적 종사자의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노인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갖게 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환경적 요인, 종사자의 특성, 노인의 특성 등의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책이 강구되어야겠다(권중돈, 2008; 변재관, 2001; 조운희, 2008). 김에스터(2014)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소진요인은 노인학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의 소진이 심할수록 노인학대행위가 높았고, 그 하위요인 중에서는 정서고갈과 개인적 성취감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학대가 노인인권과 연관되고 종사자의 소진 특히 정서적 고갈과 개인적 성취감이 직업의식과 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는 Goergen (2001)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것은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무관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약한 역상관관계를 나타내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이것은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대한 돌봄 자로서 인식은 하고 있지만,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보건복지부, 2012). 뿐만 아니라 교육의 흥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들을 고용하는 이는 가족이나, 시설관계자이고 직접 돌봄을 받고 있는 노인들은 고용의 권한이 없다보니 노인들의 인권이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다(보건복지부, 2012). 이는 노인인권에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로 생각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남자, 50세 미만, 고졸 이하, 종교 있음, 기혼, 수입이 100만원 미만, 1년 미만의 근무경력, 계약직, 40시간 미만의 주 근무시간, 인권 교육 받은 경험이 있는 대상자에서 친인권적으로 나타났다. 그 중 본 연구와 동일하게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한 손덕순(2010)의 연구에서는 성별과 교육 정도가 인권태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기에 두 요인을 중심으로 논의해본다. 본 연구에서 남자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가 여자요양보호사보다 친인권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한 김기수(2006)와 이명목(2010)의 연구에서 남자 사회복지사의 인권의식이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인

권태도에 대한 손덕순(2010)의 연구에서 여자가 남자보다 인권태도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과 본 연구결과는 상반되었다. 이는 어떤 대상자가 노인에게 더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대상자에 비해 숫자적으로 적은 남성대상자를 조사한 결과로서,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추후 성별을 고려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고졸 이하의 대상자가 노인에 대해 친 인권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중졸의 종사자가 인권상황 인지 정도가 높았던 것에 반해 고졸 종사자는 인권상황 인지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던 김대심(2010)의 연구와 교육수준이 높은 요양보호사가 인권태도 점수가 높게 나왔던 손덕순(2010)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인권교육경험은 있는 경우가 노인인권에 대한태도가 친인권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김에스터(2014)는 정선경(2007)의 연구를 인용해 노인학대 예방 교육 경험이 많을수록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이 높고 노인학대 대응행동에도 차이를 보여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노인인권의 증진과 직업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종사자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방안과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이를 관리할 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직업태도를 성별, 연령, 배우자 유무, 종교, 학력, 노인인권 교육경험, 급여, 근무형태, 현 시설 근무기간, 주당 근무시간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요인을 분석하고,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여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를 증진하는데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요양사의 인구사회적 요인 및 직업의식을 기반으로 인권교육 등이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는 전라북도의 2개 시와 1개 군 소재의 3개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1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측정도구는 고명석(200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직업의식은 곡선행(200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기간은 2010년 10월 28일부터 11월 21일까지였고, 수집한 자료는 SPSS/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의 인구학적인 요인으로 대부분이 40대 기혼여성이고 고졸 이상 학력과 종교가 있다. 직무요인으로 100만원대의 임금을 받고, 경력이 2~3년 정도 주당 45시간 근무로 계약직이 대부분이고, 인권교육은 1~2회 정도의 경험이 있다. 2)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 정도는 5점 만점에 2.08점으로 비교적 친인권적 태도를 보였다. 3) 대상자의 직업의식 정도는 5점 만점에서 평균 3.07점으로 중 정도 이상의 직업의식을 나타냈다. 4) 대상자의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간의 관계는 약한 역상관관계가이었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 인권에 대한 태도와 직업의식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시설의 근무형태와 요양보호사가 부담할 업무과중으로 근무기간, 형태와 시간이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위한 세밀한 직무형태에 관한 매뉴얼이 필요하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인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을 통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노인인권 옹호자로서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통해서 볼 때, 노인 돌봄 일선에서 담당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을 다룬 연구들이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특성과 돌보는 노인의 특성, 시설유형 등에 따라 노인인권을 대하는 태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들 특성을 고려한 비교연구 및 직업의식을 포함하여 노인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을 돌보는 다양한 시설, 종사자, 돌봄 수혜자인 노인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반복 연구 및 노인인권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요인을 가지고 분석해야 하나, 연구주제가 매우 윤리적으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인을 선택하지 못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둘째, 요양보호사 등 노인 돌봄 제공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에 대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관

의 입장에서 제도적인 방안 마련과 매뉴얼을 통한 직원들에게 숙지시키고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나 지자체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윤리 의식과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한 정규 교육과정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내에 노인인권과 직업의식을 증진하기 위한 내용이 보완되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시행되어야 한다. 김대심(2010)은 종사자가 노인인권침해의 원인을 노인의 탓으로 돌리는 편중된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인권침해에 대한 자기성찰과 기관성찰이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인권 침해의 원인을 환경적요인, 직원의 특성, 노인의 특성이라고 하는 한 측면이 아니라 복합적인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하였다.

넷째,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에 대해 친인권적인 태도를 가지고 질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및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노인인권향상을 위하여 종사자가 담당하는 업무부담감을 덜어주어 노인에 대한 긍정적이고, 직업의식 증진과 노인인권 인지 태도 증진의 결과를 가져야 한다.

REFERENCES

- 권중돈(2008). 노인복지서비스에서의 노인건강 보장 실태조사. 200-202.
- 김기경(2010). 노인요양시설 간호사 대상 웹기반 노인인권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간호과학회**, 40(4), 463-472.
- 김대심(2010).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노인인권침해 인지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에스더(2014). **노인장기요양시설의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교양시 노인장기요양시설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서울.
- 김영태, 김희용, 염영배(2009). 요양시설과 재가시설의 요양보호사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46, 53-75.
- 박성익, 이승미(2000).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효과검증 연구. **교육학연구**, 38(1), 185-205.
- 변재관(2002). 21세기 노인복지정책의 전망과 과제. **한국노인복지학회**, 14, 251-274.
- 보건복지부(2013). 2012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
- 서울시복지재단(2009). 요양보호사교육기관평가 및 우수교육기관 선정. Retrieved 08.15., 2008, from http://library.mw.go.kr/Users/bogun/K/Go/PdfViewer.aspx?mastid=64724&pdf_url=MS014926.pdf
- 선우덕(2003). 노인 장기요양보장정책의 추진방안. **월간 복지동향**, 60, 14-21.
- 손덕순(2010). 요양보호사의 인권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복지연구**, 48, 299-322.
- 우국회(2009). 부적절한 실천과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책임.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4, 61-77.
- 은영, 구미옥, 김은심, 강영실(2001).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의 건강상태 및 건강서비스 요구. **노인간호학회지**, 3(1), 7-21.
- 이연순(2010). **요양보호사의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연구**. 서울 기독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 이인수(1997). 노인요양시설의 경영에 관한 기초조사. **대한보건연구**, 23(1), 101-121.
- 전국요양보호사협회. (2009). from <http://kwca.onmam.com/>
- 정성경(2007). **노인학대신고의무자들의 노인미학대에 대한 인식수준과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국내석사논문, 경주.
- 조운희(2008). 노인요양시설 입소노인의 인권이 종사자 학대충동에 미치는 영향. **노인복지연구**, 41, 429-450.
- 채은희, 이효영(2004). 우리나라 정신요양시설 종사자의 직무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8(1), 27-38.
- 통계청(2013). 2012 한국의 사회지표. Retrieved 04. 02, 2014, from.
- 통계청(2013). 「2012년 노인학대현황보고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Goergen, T. (2001). Stress, conflict, elder abuse and neglect in German nursing homes: A Pilot study among professional caregivers,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13, 1-26.
- National Association of State Units on Aging (2005). National home abuse risk prevention profile and checklist. Washington, USA: Author.
- Pillemer, K. A., & Bachman-Prehn, R. (1991). Helping and Hurting: Predictors of maltreatment of patients in nursing homes. *Reach on Aging*, 13, 74-95.